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4 년 09 월 30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
(영문명) Susung Asset Management co. ltd.  
(홈페이지) /http://www.susungasset.co.kr/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Three IFC 34층  
(전 화) 02-6747-6714

대 표 이 사 : 박세연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상무  
(성 명) 김주한 (전 화) 02-554-1863

작 성 자 : (직 책) 부장  
(성 명) 송현영 (전 화) 02-6747-6714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6-2호)

소송 등의 판결.결정

1. 사건의 명칭	사해행위취소
2. 원고·신청인	주식회사 탑플랫폼대부
3. 판결·결정내용	원고의 청구 기각
4. 판결·결정사유	판결
5. 관할법원	서울남부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4.09.25
7. 확인일자	2024.09.27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판결·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·취하·인낙·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·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